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11월 3일

3. 제안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주변 물류 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물류단지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개최, 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20. 9. 18.~'20. 10.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7 개정예 따라 물류단지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던 실수요 검증을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